

9.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발 의 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07년 6월 11일
- 심 사
  - 제1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
    -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(2007. 6. 22) 상정 및 의결

2. 주요골자

-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(안 제3조).
- 예우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- 예산의 지원 및 지원대상 사업을 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보조금 신청 및 중복지원 금지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5조, 제6조, 제16조.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입법예고(2007.5.1 ~ 5.21) 결과 : 의견 없음

4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보건복지여성국장 이혜순)

○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해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5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박창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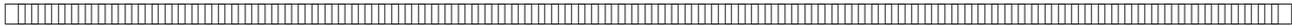
○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차원의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(정의)에서 “재향군인”이라 함은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,
- 안 제3조(시민의 책무)에서는 시민의 책무로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시의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4조(예우)에서는 시장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,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의전상의 예우와 재향군인 및 유가족에 대한 표창과 격려 등 예우에 대해 정하고 있음.
-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향군업무 교육사업 등을 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8조(중복지원 금지)에서는 다른 법령·조례 등에 의하여 안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도록 중복지원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○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동 조례안은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의 목적에 따라 재향군인회 회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 이 사안은 동법 제16조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.
- 다만, 민간단체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에 있어 타 민간단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

6. 질의·답변요지

| 질 의  | 답 변   |
|--|---|
| <p>○ 동 조례 제정으로 타 민간단체보다 많은 예산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?</p> <p>○ 재향군인회의 범위에 고엽제 피해, 월남참전 전우회 등도 포함되는지?</p> <p>○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어보이는 데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있는 지?</p> | <p>○ 지금 현재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별도 추가지원 되는 것은 없음.</p> <p>○ 포함되지 않음.</p> <p>○ 지자체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명문화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.</p> |

7. 토론요지

-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